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작업중지 해제 심의 시 근로자대표 등의 의견 반영 명시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78호)

2026. 3.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작업중지 해제 심의 시 근로자대표 등의 의견 반영 명시	2

I. 제안경위

2025년 11월 26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심의위원회에 재해 현장의 실제 근로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지가 해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필요 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작업중지 해제 심의 시 근로자대표 등의 의견 반영 명시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에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필요 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로부터 확인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55조제3항 후단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② (생략)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 ----- ----- ----- ----- ----- ----- ----- -----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④ (생략)	<u>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재발 방</u> <u>지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필요한</u> <u>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근</u> <u>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u> <u>자 대표로부터 확인한 의견이 반</u> <u>영되어야 한다.</u>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도록 절차를 규율한 현행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적 절차를 규정하여 작업 환경의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이 재개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법령이 규정하는 절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심의위원회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근로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

되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지가 해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대신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재발 방지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완료 여부에 관한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로부터 확인한 의견을 직접 심의위원회에서 반영 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현장상황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이 직접 심의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완료 여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가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에 개정안과 같이 근로자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대표로부터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현행 법령상 작업중지 해제 신청 단계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위험 요인 개선 내용에 대해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심의위원회 역시 근로자 의견을 포함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해제를 불승인하고 있어, 위험에 직접 노출되고 작업중지 명령 처분이 이루어진 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현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는

해당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이므로 해당 작업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대표, 관계수급인 근로자 대표 등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포함하여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작업중지 해제의 구체적인 절차, 근로자 의견 확인 방법, 작업중지 해제심의 시 반영 방법 등 집행·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율하기 보다는 하위 법령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입법 체계상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45